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외유학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시 평가항목에 학업성적이 있음에도 응시자격부터 학업성적을 제한하여 응시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음. 이에, 응시자의 자격요건 규제를 개선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현행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1. 11. ~ 12. 9.)

대통령령 제 호
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응시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	제21조(응시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 (독학자의 경우에는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)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	<삭 제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 1호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같 은 항 제2호의 평균성적이 만점 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	<삭 제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6766, 6758